

## 집합규약 변경대비표

1. 투자신탁의 명칭: 아리 사모 공모주 전문투자형 투자신탁 제 1 호
2. 집합투자규약 변경 사유:
  - 2021년 2월 9일 공포/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71 조제 2 항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적용
  - 운용사 성과보수 조정
  - 투자신탁보수 계산기간 조정
  - 운용사명, 대표이사명 변경 적용
3. 약관변경 시행일: 2021년 4월 16일

### 4. 약관변경내용

변경 전	변경 후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신탁계약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,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아리자산운용주식회사와 신탁업자인 KB증권 주식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신탁계약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,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<b>아리자산운용주식회사</b>와 신탁업자인 KB증권 주식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
<p><b>제3조의2(투자신탁의 가입제한)</b> 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(이하“적격투자자”라 한다)에 한한다.</p> <p>1. 전문투자자로서 법시행령 제271조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자</p> <p>2. 1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, 그 밖의 단체(「국가재정법」별표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</p>	<p><b>제3조의2(투자신탁의 가입제한)</b> 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(이하“적격투자자”라 한다)에 한한다.</p> <p>1. 전문투자자로서 법시행령 제271조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자</p> <p>2. <b>3억원</b>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, 그 밖의 단체(「국가재정법」별표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</p>
<p><b>제34조(보수) ①&lt;생략&gt;</b></p> <p>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“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제28조의 투자신탁회계기간으로 하며,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	<p><b>제34조(보수) ①&lt;현행과 동일&gt;</b></p> <p>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“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<b>매 3개월간</b>으로 하며,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

**제34조의2(성과보수)**

1. <생략>

2. 성과보수금액 및 계산방법

가. 성과보수금액 :  $\text{Max} [\text{초과수익금액}^{(1)} \times \text{성과보수율}^{(2)}, 0]$

나. 계산방법

구분	이익분배금지급 일	수익증권환매일
(1) 초과수 익금액	성과보수 계산 기간 말일의 투 자 신탁평가액 <sup>(3)</sup> - High Water Mark 평가액 <sup>(4)</sup> $\times [1 + \text{Hurdle}$ $\text{Rate}(\text{연}7\%)]$	투자신탁 종료일 의 투자신탁 평가액 <sup>(7)</sup> - High Water Mark 평가액 <sup>(4)</sup> $\times [1 + \text{Hurdle}$ $\text{Rate}(\text{연}7\%)]$
(2) 성과보 수율	30%	30%

<생략>

3. 성과보수한도

가. 집합투자업자는 성과보수 계산기간 말일의 투자신탁평가액에서 제2호에 따라 성과보수를 차감한 금액이 투자원금(취득가액과 재투자금액을 포함)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성과보수를 취득한다. 다

**제34조의2(성과보수)**

1. <현행과 동일>

2. 성과보수금액 및 계산방법

가. 성과보수금액 :  $\text{Max} [\text{초과수익금액}^{(1)} \times \text{성과보수율}^{(2)}, 0]$

나. 계산방법

구분	이익분배금지급 일	수익증권환매일
(1) 초과수 익금액	성과보수 계산 기간 말일의 투 자 신탁평가액 <sup>(3)</sup> - High Water Mark 평가액 <sup>(4)</sup> $\times [1 + \text{Hurdle}$ $\text{Rate}(\text{연}0\%)]$	투자신탁 종료일 의 투자신탁 평가액 <sup>(7)</sup> - High Water Mark 평가액 <sup>(4)</sup> $\times [1 + \text{Hurdle}$ $\text{Rate}(\text{연}0\%)]$
(2) 성과보 수율	15%	15%

만, 이미 취득한 성과보수는 환급하지 아니한다.

나. 성과보수의 합계금액은 회계기간 별로 연 환산  
오천오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<현행과동일>

3. 성과보수한도

가. 집합투자업자는 성과보수 계산기간 말일의 투  
자신탁평가액에서 제2호에 따라 성과보수를  
차감한 금액이 투자원금(취득가액과 재투자금  
액을 포함)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성과보  
수를 취득한다. 다만, 이미 취득한 성과보수는  
환급하지 아니한다.

나. <삭제>

<p>집합투자업자 :</p> <p>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23, 중앙빌딩 아리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마 주 옥 (인)</p>	<p>집합투자업자 :</p> <p>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23, 중앙빌딩 아리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충 훈 (인)</p>
---	---

5. 수익자 동의

위 집합투자규약 개정에 동의합니다

수익자: (인)